

라온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장기요양급여제공규정

제1조(장기요양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서비스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급여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대상은 아래와 같다.

- ①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1~5등급 판정자)
- ②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는 자
- ③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 지장이 있는 자
- ④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⑤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써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 ⑥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⑦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 ⑧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4조(급여제공관련 정보게시)

기관은 기관내부에 수급자 및 그 가족이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운영규정개요
-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3)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게시 내용
 -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인력 현황표
 - 노인학대 신고기관
 - 비상연락체계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제5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일상 활동), 방문목욕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7조(비급여항목)

장기요양보험법과 무관한 요양업무에 대한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및 가사 일상생활지원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제8조(서비스제외 및 금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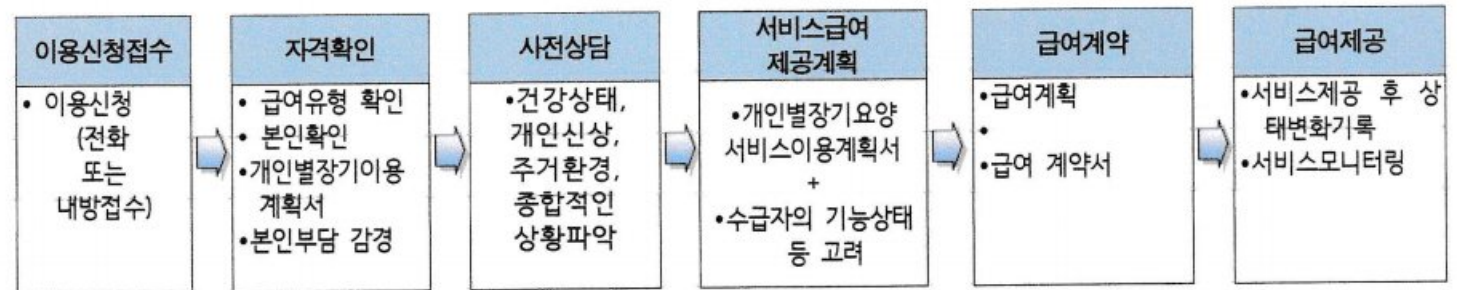
-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2)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3)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2장 이용자(수급자)정원 및 이용절차

제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수급자 정원)

수급자 정원: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정원은 정하여지지 않는다.

제10조(이용절차)



- 1)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로 이용신청
- 2) 장기요양수급자 자격 확인
 -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통해 장기요양수급자여부 확인 확인하여야한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3) 사전상담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4) 서비스급여제공계획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되,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서비스 계약체결 :

-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 알리고 공단에 통보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서식으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 ④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기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 수급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수급자택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기록한다.

7) 서비스모니터링 :

-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을 하여 수급자별로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거쳐 연1회 서비스모니터링을 하여 급여계획서에 결과 반영한다.
- 단,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가 있을 시 사례관리 등을 통해 급여계획을 재반영하여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다.

8) 기타

- ① 수급자의 서류관리: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에 대한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 ②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 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개인별 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으로 계약후 계약내용을 등록하고 급여계획서의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공단으로 통보하고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라온재가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1) 수급자 어르신 요양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 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 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3.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2022.01.01.기준)
5.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1~3>와 같이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표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년 기준)

구 분		금액 (원)	구 분		금액 (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2	60분 이상	22,38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3	90분 이상	30,17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8	240분 이상	61,950

<표2> 방문목욕의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2년 기준)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의료(9.0%)	감경,의료(6.0%)	국민기초
나 - 1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78,580	11,780	7,070	4,710	면제
나 - 2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70,850	10,620	6,370	4,250	면제
나 - 3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6,630	3,980	2,650	면제

※60분이상 제공시 : 100%산정 / 40분이상 60분미만 제공시 : 80%산정

<표 3> 등급별 방문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표 2>

구분		1등급 (원)	2등급 (원)	3등급 (원)	4등급(원)	5등급(원)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본인 부담금	일반(15%)	250,900	223,020	202,620	186,730	160,270
	감경,의료급여(9.0 %)	150,540	133,810	121,570	112,040	96,160
	감경,의료급여(6.0 %)	100,360	89,200	81,040	74,690	64,110
	국민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제2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한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2조(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 1)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 등에 의해 폭언, 폭행, 상해를 받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 등에 의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받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은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1. 수급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방문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2. 수급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3)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5)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6)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7)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8) 안전하고 쾌적하며 적절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5) 본 기관 요양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본인부담금 미납확인서 통보 후 답변이 없을 경우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 9)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1)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지를 유보할 경우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보험료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12)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13) 가족요양일시 가족인요양보호사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160시간 이상 근무 시와 160시간 근무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